

제안번호	제 99호
의 결 년월일	1999. 8. (제 회)

서산시읍·면·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8. 4/

서산시읍·면·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8. //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서산시읍·면·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나타난 미비점 및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침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부위원장은 부읍·면장, 사무장으로 규정된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개정 (안 제4조제3항).
- 나. 읍·면·동복지회관의 사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 규정 된 것을 3년 이내로 완화 (안 제16조제1항).
- 다.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 관장이 단독으로 사용허가 결정하는 조항 폐지 (안 제16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
- 입법예고(99. 7. 14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- 규제개혁심의회(99. 6. 23)결과 : 완화

서산시읍·면·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읍·면·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중 “ 읍·면에는 부읍·면장, 동에는 사무장이 되며 ” 를 “ 위원
중에서 호선하며 ” 로 한다.

제16조제1항중 “ 1년 ” 을 “ 3년 ” 으로 하고,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문 대 조 표

현	개
<p>제4조(구성) ① 및 ② (생략)</p> <p>③위원장은 읍·면·동장이, 부위원장은 읍·면에는 부읍·면장, 동에는 사무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조(구성) ① 및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..... 위원중에서 호선하며....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사용허가) ①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,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.</p> <p>② 및 ③ (생략)</p> <p>④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.</p> <p>⑤ 및 ⑥ (생략)</p>	<p>제16조(사용허가) ①..... 3년.....</p> <p>② 및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⑤ 및 ⑥ (현행과 같음)</p>